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6회 제2차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5. 11.

임 미 연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임 미 연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**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과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.

**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안 제6조에는 기부자 약칭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22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23조에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24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.

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임미연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111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4.

발 의 자 : 임미연, 황국주, 도하석  
장호섭, 이진환, 김기열

## 1. 제안이유

-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과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(안 제6조)
- 나.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(안 제22조)
- 다.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(안 제23조)
- 라.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(안 제24조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- 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###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기부자”를 “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(이하 “기부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)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홍보활동
2.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
3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3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.

1.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
2. 구 홍보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표
3. 구 시책 홍보 또는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, 감사 서한문 등 발송
4. 그 밖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4조(포상)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)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<u>기부자에게</u>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을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) ----- ----- <u>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(이하 “기부자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22조(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)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홍보 활동</u></li> <li><u>2.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</u></li> <li><u>3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사업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li> </ol> <p><u>제23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23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</u></li> <li>2. <u>구 홍보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표</u></li> <li>3. <u>구 시책 홍보 또는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, 감사 서한문 등 발송</u></li> <li>4. <u>그 밖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<u>제24조(포상)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u></p>

# 【 관계 법령 】

## 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

제12조(제도의 홍보·연구 및 지원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, 주기적인 조사·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·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